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교통위원회 장우윤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주신「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 '서울형혁신교육지구'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지향적 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.

□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안 제3조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, 운영 및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,

안 제5조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운영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정하였고,

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